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01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54238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redacted]주식회사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5. 18.

판 결 선 고 2018.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74,054,901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01

가. 원고는 2015. 11. 9. [redacted]주식회사(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면세사업부문(자산가액 1,790,419,626원)을 물적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이라 한다)하고 [redacted] 구 [redacted]로[redacted]길 [redacted](동)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1. 9. 분할법인으로부터 임대사업부문을 현물출자가액 9,113,111,243원, 현물출자일 2015. 12. 21., 대가 기명식 보통주 2,025주(1주의 액면금 5,000원, 발행가액 450만 원, 단주 611,243원은 현금으로 지급)로 정하여 현물출자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31. 이를 원인으로 그 자산인 [redacted]구 [redacted]동[redacted] 토지 6,053.2㎡ 및 지상 건물 4,210.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법인은 2015. 11. 25. 본점 주소를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이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한 후, 2015. 12. 21. 그 지점을 폐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12. 21.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계산한 다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 제3항 제3호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2015. 12. 31. 면제받은 취득세액의 20%인 농어촌특별세 148,109,81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25. 피고에게 "원고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01

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분할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농어촌특별세 74,054,901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2.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7.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으로서 분할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조항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도 적용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도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 중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적용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01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그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대도시인 인천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15. 12. 21. 무렵 지점을 설치하면서, 그 무렵 분할법인의 임대사업부문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1]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법인의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거나 또는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중과세 적용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여부

다만 이 사건 조항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

1) 지점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므로 지점 설치의 기준일은 등기일이 아닌 사실상의 설치일 즉 지점에서 실질적인 업무활동을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대가인 기명식 보통주 2,025주의 발행·인도 및 단주 해당 금액 611,243원의 지급일이라고 할 것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01

국법인인 분할법인의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후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면서 그 지점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조항 중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의 목적어는 그 바로 앞에 위치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고 보는 것이 문리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나)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부동산 취득의 원인으로 ① 법인의 설립, ② 지점·분사무소의 설치, ③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전입의 세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그 중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 해석상 타당하다.

다) 원고는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대도시 내 법인의 경우 향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법인의 경우에도 대도시 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지점 설치 이전에 그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이나 그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모든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 중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이 대도시 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경우인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 지점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은 당연히 중과세가 적용되며,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합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당초 분할법인의 본점 소재지였고, 또한 2015. 11. 25. 이후에는 지점 소재지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가 아닌 분할법인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01

로부터 취득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분할로 인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거나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는 분할법인의 면세사업부문 분할로 설립된 이후에 임대사업부문을 현물출자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어서 면세사업부문의 분할과는 무관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조항을 분할 후 새로운 지점의 설치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면세사업부문과 임대사업부문을 한꺼번에 분할하였을 경우 임대사업부문이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었을 사건에서, 면세사업부문만을 분할한 후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고 임대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적격분할의 경우에만 취득세 중과세를 배제하고자 하는 이 사건 조항의 취지를 잠탈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3) 소결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01

재판장 판사 김예영

판사 조성훈

판사 이서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01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

2.「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법인세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4.「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5.「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6.「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같은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상법」 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01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01

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법 제13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8-01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끝.